

회 의 록

회 의 명	2017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
일 시	2017. 5. 18(목) 13:30 ~ 14:20
장 소	본관 8층 대회의실
참 석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원장 : 김선구 기획처장 ○ 위 원 : 이상욱(총학생회 회장), 백서연(부총학생회장), 이규현(직장협의회장)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이종성(대학원원우회장)
불 참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 원 : 이승로(교수협의회장), 최진수(한국능률협회), 김현철(공인회계사)
안 건	2016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(안) 심사의결
토의내용 요지 및 합의사항	<p>□ 김선구 위원장의 개회선언과 이규현 위원의 기도로 회의를 시작함.</p> <p>[안건] 2016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(안) 심사의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김선구 위원장은 ‘16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(안)에 대하여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의 합산 재무제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보고함. ○ 2016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(안)에 대하여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의 합산 재무제표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보고함. ○ 자금계산서 수입 및 지출 총액은 42,805,513,736원으로 최종추경 예산액 42,670,023,000원 대비 100.3%임.(이월자금 제외 97.5% 집행) ○ 자금계산서상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감한 금액으로 교비회계 합산 1,418,708,471원(등록금회계 586,651,258원, 비등록금회계 832,057,213원)을 차기 이월하기로 함.(등록금회계 기타이월액 382,560,258원으로 비율은 1.39%) ○ 운영계산서 결산액은 총 42,023,368,235원으로 보고함. 이 중 기본금대체액은 2,454,375,188원, 운영차액대체액은 2,477,914,010원으로 당기운영차액(운영수익-운영비용-기본금대체액+운영차액대체액)이 -2,133,948,772원으로 보고함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다음장에 계속</p>

앞장에서 이어짐.

-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계는 126,564,919,109원으로 전기 대비 1,879,877,682원 감소하였으며, 부채와 기본금은 각각 11,425,025,142원과 115,139,893,967원으로 전기 대비 부채는 277,609,912원이 증가하였고, 기본금은 2,157,487,594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 -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일부개정(법률 제14468호; '16.12.27)으로 임의기 타적립금 183,718,219원을 임의퇴직적립금으로 목적을 변경하여 적립함.
 - 김선구 위원장은 2016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(안)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사·의결하는 것을 제안함.
 - 참석위원 전원이 이에 동의함.
- 위원장의 폐회 선언 및 주기도문으로 회의를 마침.

토의내용
요지 및
합의사항

(앞장에서 이어짐)

2017. 5. 18.

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.

위원장	<u>김민우</u>	<u>(인)</u>
위원	<u>이상욱</u>	<u>이(상)욱</u>
위원	<u>백서연</u>	<u>백(서)연</u>
위원	<u>이종성</u>	<u>(인)</u>
위원	<u>이규환</u>	<u>(인)</u>
위원	_____	(인)
위원	_____	(인)
위원	_____	(인)

끝.

2017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

- 일 시 : 2017. 5. 18(목) 13:30
- 장 소 : 본관 8층 대회의실
- 안 건 : 2016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(안) 심사·의결



한세대학교
기획처 기획평가팀

【안건】 2016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(안) 심의

1.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요약

[별첨] 자료

2. 교비회계 대차대조표 요약

[별첨] 자료

3. 교비회계 운영계산서 요약

[별첨] 자료

4. 임의기타기금 전용 계획

1) 관련근거 :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일부개정 (법률 제14468호 : '16.12.27)

2) 주요내용 : 사립대학 '기타적립금'을 '특정목적적립금'으로 변경(제32조의2)

3) 유의사항

○ 특정목적적립금 적립 및 범위

- 대학 발전계획 및 특성에 따라 '구체적인 목적'을 설정하여 적립·관리
- 특정목적적립금은 구체적인 목적 및 대상, 용도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, 추상적이고 용도가 불분명한 기금 조성은 안됨

<특정목적적립금 예시> 학생복지기금, 교직원복지기금, 국제협력기금, 우수교원초빙기금, 창업지원기금, ○○기자재 확보기금, ○○선교기금, 학생취업장려기금 등

○ 회계처리

- '17회계연도부터 새로 적립하는 경우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고, 기존 기타적립금은 '17회계연도 내에 '특정목적적립금'으로 전환 또는 사용

※ 기존 기타적립금 중 특정목적적립금으로 전환이 아닌 연구·건축·장학·퇴직으로

변경 또는 인출·사용 시 자금 예·계산서 반영

- 특정목적적립금(목) 내에 세부 목적기금(세목) 계상
- 적립금은 **적립 목적으로 사용**하되, 부득이한 사유로 목적을 변경할 경우 예산 변경절차(이사회 심의·의결 등)에 따라 변경

◆ (참고) 법 개정에 따라 「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」 부속명세서 등 개정 예정

4) 임의기타기금 전용(안)

(단위:원)

기금구분	변경(전용) 전	변경(전용) 후
임의기타기금	183,718,219	
임의퇴직기금		183,718,219

※ '17회계연도부터 '임의기타기금'은 '임의특정목적기금'으로 변경됨